#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2

2016년 12월 7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1. 11. 김동욱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6. 11. 14.

다. 상정 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동욱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선 거구민에게 제작·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정 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 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건의안의 취지

- 본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이하 "의정보고서")
  발간 및 발송에 필요한 지방의회 차원의 별도 예산 편성이 불가하고, 의정보고서 발송 우편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편성과 우편요금 감 면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지워 현황

○ 국회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자료 발간비' 및 '정책자료발송료'를 편성해 의정보고서 발간과 발송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표 1>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예산 | 2017년 예산(안) | 증감 | 비고                               |
|----------|----------|-------------|----|----------------------------------|
| 계        | 5,273    | 5,309       | 36 | 2017년 기준<br>지역구 국회의원(253명) 1인당   |
| 의정자료 발간비 | 3,900    | 3,900       | _  | 1,857만원,<br>-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1인당 |
| 정책자료 발송료 | 1,373    | 1,409       | 36 | 300만원                            |

- 또한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 마목에 따라
  연간 3회 범위에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감면(일반 우편요금의 67% 감액) 해주고 있음.
- 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9가지 의 정활동 소요경비 외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고, 우편요금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표 ≥ 의회비 9가지 유형

| 1. 의정활동비  | 4. 의원국외여비    | 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
| 2. 월정수당   | 5. 의정운영공통경비  | 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 3. 의원국내여비 | 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2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을 제한받고 있고, 지역 주민은 선거구민으로서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 3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보고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즉, 지방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음.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선거 전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지방의원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정도가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행법령은 유독 지방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 우편요금 감면을 포함한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전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원은 직업정치인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입법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등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 있어 국회의원과 근본적인차이가 없음.
  - 오히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비해 지역 주민의 세세한 각종 민원과 행정적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일부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많은 선거구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 의정활동의 질량(質量)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은 정치 후원회 조직 등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도 금지된 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의 활동 전반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면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방의원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강한 결의로 받아들여져야 함.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 시 필요한 발간·발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의정보고서 제작과 관련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현재 지방의원의 각종 활동비 및 정치자금 지원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있는 것은, 이미 직업정치인으로서 지역 전반을 살피고 있는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불합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서 비롯된바, 이를 타파하고자 제안된 본 건의안은 충분한 시의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의안 번호 1522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자: 김동욱·김인제·김미경

이상묵·김선갑·박기열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윤·박마루·우미경 의원

(12명)

## 1. 주 문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선거 구민에게 제작·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 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우편법 시 행규칙」에 따라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2.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는 단체장 의 전횡과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음.
-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 달리 할 뿐, 해당 선거구민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할 의무와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 발간(이하 "의정보고서")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에 의거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고, 우편 요금 감면 혜택도 전무하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제 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3. 이 송 처

○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 달리 할 뿐,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할 의무와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 발간(이하 "의정보고서")과 발송 예산(2016년 기준 52억 7,300만원 / 국회의원 1인당 1,758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에 의거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감면혜택(우정사업본부 고시, 일반우편요금의 67% 감액)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9가지로 유형화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보고서'제작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반영할 수 없다. 또한,「우편법 시행규칙」에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의정보고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고 우편요금 감면 혜택도 전무하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 런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